

「2026년 식품제조업소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 참여업소 모집 공고

식품제조업소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으로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제품 생산으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2026년 식품제조업소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 참여 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16일

대구광역시장

I 사업개요

- 기간 : '26. 4월 ~ 12월
- 지원대상 : 영세 식품제조 · 가공업 50개소*
* '24년 연매출이 10억원 미만인 업소
- 사업내용 : 자가품질검사비 200천원 균등지원(최대 3회 검사비 지원)
 - 업소별 1회 검사비 200천원 이상인 경우 1회 검사비 지원
 - 업소별 1회 검사비 200천원 미만인 경우 3회까지 검사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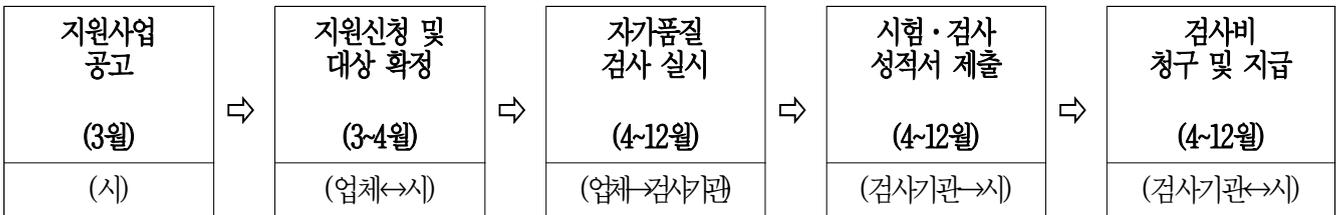
✓ 지원예시

- ex) A업체 OO제품 1회 검사비 235,000원인 경우
: 대구시 200,000원 지원 / 업소 35,000원 자부담
B업체 OO제품 1회 검사비 80,000원인(3회 검사비 240,000원) 경우
: 대구시 200,000원 지원 / 업소 40,000원 자부담

○ **검사기관**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구·경북 내 검사기관에서
검사 실시

- 계명대학교 전통미생물자원개발 및 산업화연구센터(053-580-6446, 대구 달서구)
- 디에이치유(DHU)바이오 융·복합시험센터(053-819-1495, 경북 경산시)
- 재단법인 경북바이오 산업연구원(054-850-6901, 경북 안동시)
- 포항시 수산물품질 관리센터(054-270-2862, 경북 포항시)

II 추진절차



* 검사기관에서 청구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지출서류를 제출하면 업체 검사 지원비 지급

III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6. 3. 16.(월) ~ 3. 30.(월)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대구시 소재로 영업자 시작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영세 식품제조·가공업소*

* '25년 연매출이 10억원 미만인 업소

✓ 자격제한

- ① 최근 2년간(23. 3. ~ 공고일) 행정처분(품목(류)정지, 영업정지 이상)을 받은 업체
- ② 자가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업체(신청 시 최근 2회분 시험·검사성적서 첨부)
- ③ 지방세 체납 업체
- ④ '25년 타 기관(부서)에서 자가품질검사 비용을 지원받은 업체

○ 신청방법 : 방문 및 이메일(dong02@korea.kr) 접수

○ 접수처 및 문의처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 1가)
8층 위생정책과(☎ 053-803-3412)

○ 신청서류

- 2026년 식품제조업소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첨부서류 ① 영업등록증 사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④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자가품질검사 시험·검사성적서(최근 2회분) 사본 ⑥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서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IV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대상 : 영세 식품제조·가공업소 신청이 50개소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의 선정기준을 따름
- 선정기준 : 1순위 - HACCP 인증업소 / 2순위 - 전년도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 미참여 업소 / 3순위 - '24년도 기준 연매출이 낮은 업소
- 선정통보 : 개별 통보

